

별첨5)

감 사 의 건 서

 팔 탄 농 협

감 사 의 건 서

농협법 제71조 및 조합정관 제52조 6항에 의거
2018년 1월 17일 당조합 나종석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
2017년 결산보고서[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
및 잉여금 처분(안)]의 각 사항에 대하여 엄밀히 감사한
결과 부적격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였기에 당조합 조합장이
제출한 2017년도 결산보고서[사업보고서 및 재무상태표,
손익계산서, 잉여금 처분(안)]는 그 내용이 적정함을 인정
합니다.

서기 2018 년 1 월 17 일

 **팔탄농업협동조합**

감 사 권 은 석  (인)

감 사 김 종 섭  (인)